

##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5월 30일 목포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2001년 6월 9일

### 2. 제안설명요지

#### 가. 제안설명

- 본 회 의(제1차) : 총무국장 정 은 면
- 총무사회위원회 : 세무과장 임 영 진

#### 나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한 목포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목포시 시세조례 제8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코자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2001. 4. 9일 목포시 도시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로 목포시 전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간 도시계획세 부과 제외지역인 울도동, 달동(허사, 달리, 외달도), 대양동, 옥암동일부(1단계1차택지지구), 공유수면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목포시 전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임.

#### ○ 목포시 도시계획구역 변경내역

현 행		변 경	
구 역	면적(km <sup>2</sup> )	구 역	면적(km <sup>2</sup> )
계	56.385	계	78.236
목포시	48.903	목포시	77.396
무안군	0.84	무안군	0.84
영암군	4.956	영암군	0
신안군	1.686	신안군	0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### 4. 위원회 활동

- 제10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6. 9.)
  -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  - 안전검토 및 심사의결

### 5. 토론요지

- 목포시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서지역인 율도동, 달동과 대양동, 옥암동 일부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으로서 지정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01년 4월 9일부로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목포시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
- 목포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코자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「원안가결」 하였음.

### 6. 심사결과

【원 안 가 결】